

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8. 1 평창군수(내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8. 9. 15.
- 다. 상정일자 : 1998. 9. 16 제59회 평창군의회 (임시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가. 현행 장학생 자격기준이 종합석차 산정제에 의거 “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”로 규정되어 있어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
- 나. 중·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(교육부 예규247호)이 개정되어 「종합석차 산정제」가 「과목별 성취도 평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장학생 자격의 변경
 - “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”에서 “과목별 성적이 「우」 평정 50% 이상인자”로 변경

4. 검토의견

-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('96. 9. 2 교육부 예규 247호)에 의거 종합석차 산정제가 교과별 석차만을 산출토록 변경되어 성적증명서 발급제도가 폐지 되었음.
- 따라서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금 지급 기준은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“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”에서 “과목별 성적이 「우」 평정 50%이상인자”로 변경하는 것임.
-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